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진해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6. 03. 17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견책(6명), 경고(14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이자상환능력 검토의견 소홀 등

○ 기업자금대출 취급시 이자상환능력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증빙없이 대출을 취급 하였으며, 심사의견서 작성과 대출 심사시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.

숙박시설 리모델링 대출 취급 부적정 등

○ 리모델링 대출금 취급시 대출 대상자 요건, 용도변경 내역, 외부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하여 대출을 부적정하게 취급하였으며, 여신심사역 및 대출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를 소홀히 하였음.

부동산 경락대금 대출 취급 부적정

○ 기업시설일반자금대출 취급시 대출금액과 매각금액에 따라 대출가능 금액이 전 회차 법사가를 초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○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1편 제48-6조(업무처리), 제54조(심사사항 등), 제85-35조(용어의 정의), 제85-36조(적용대상), 제85-38조(업무처리 기준), 제3편 제68조(자금 용도 사후점검), 제70조(사후점검 방법), 제5편 제144-2조(대출한도), 제838조(용어의 정의), 제839조(담보취득 대상), 제842조(대출대상자), 제843조(대출한도), 제846(대출금의 지급), 제847조(징구서류), 제848조(사후관리)

○ 「상호금융 담보물 가격조사 업무방법」 제16조(가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사용기간), 제26조(외부감정 평가서 사본 활용)